

「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 이주용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에 관해 정함.  
(안 제4조)
-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.  
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해 정함.  
(안 제7조)
-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등에 관해 정함. (안 제8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음. (안 제9조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, 본칙 1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
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  
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 
안 제7조에서는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해  
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 
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.
- 평창군의회 입법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